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연구역 내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설치·운영 등 》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58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82호)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32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금연구역 내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설치·운영(김소희의원안)	4
2. 가향 담배 제조·판매 금지 등 (송재봉의원안)	10
3. 전자담배의 전자거래 금지(서지영의원안)	29

I. 개요

1.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75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7. 25.
- (3) 회 부 일 : 2025. 7.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장소, 특히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2.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78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28.

(3) 회 부 일 : 2025. 7.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3.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8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금연구역 내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설치·운영(김소희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흡연 예방 및 계도를 위한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⑨ (생략) <u><신설></u>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흡연 예방 및 계도를 위한 음성안내기 및 경고표지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시설관리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⑪ 제10항에 따른 금연 안내설비의 설치 기준, 운영 방식, 기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금연구역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국회 및 정부 청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의료기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직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유형과 지자체가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유형임.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련 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 26.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총 1,687,11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186,871개소임.

<금연구역 현황 (2024.11.19.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개수	1,873,987 (100.0%)	1,687,116 (90.0%)	186,871 (10.0%)

□ 개정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흡연 예방 및 계도를 위한 음성 안내기 및 경고표지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억제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실제 서울시 영등포구, 일산시 서구, 안산시 단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 음성안내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기도 함.

□ 특히, 최근 금연구역내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매년 1만건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킬 필요도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정 금연구역 내 과태료 건수	10,509건	10,044건	7,564건	10,408건	7,991건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매년 12. 31. 기준)
 ** 2025년 실적의 경우 2026년 산출 예정

- 다만, 현행법(제9조제4항부터 제7항)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관리 주체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지자체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금연구역 내 음성안내기 설치·운영의 주체도 이에 맞춰 국가는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가 정비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개정안에서는 금연구역내에 음성안내기 외에 안내표지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제9조제4항부터 제7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내표지 설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에 음성안내기 및 경고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연구역내 흡연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음성안내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금연구역의 관리 주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국가를 관리 주체로 설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음성안내기 설비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안내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 외, (사)한국담배협회는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방송 시,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권 침해 및 집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금연구역안내방송 설치 근거 마련은 과잉 규제에 이어질 수 있으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는 의견임.

【참고자료】	금연구역 현황
--------	---------

1.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종류별 현황 (2024.11.19.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687,116	100.0
청사(제1~5호)	16,811	1.0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제6호)	28,727	1.7
어린이집(제9호)	19,888	1.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제6항)	48,655	2.9
대학교(제7호)	564	0.0
의료기관(제8호)	77,027	4.6
청소년활동시설(제10호)	1,229	0.1
도서관(제11호)	5,792	0.3
어린이놀이시설(제12호)	65,807	3.9
학원(제13호)	89,285	5.3
교통관련시설(제14호)	11,059	0.7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제15호)	41,613	2.5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제16호)	191,451	11.3
공연장(제17호)	606	0.0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제18호)	1,640	0.1
관광숙박업소(제19호)	3,249	0.2
체육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업(제20호)	63,959	3.8
사회복지시설(제21호)	58,844	3.5
목욕장(제22호)	5,914	0.3
게임제공업소(제23호)	24,534	1.5
음식점(제24호)	925,979	54.9
만화대여업소(제25호)	781	0.0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제26호)	307	0.0
공동주택(제5항)	3,395	0.2

* 자료출처: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5.2.3.)

2.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종류별 지정 현황 (2024.11.19. 기준)

(단위 : 개소, %)

시설	시설현황	
	시설현황	현황별 비율
계	186,871	100.0
도시공원	14,040	7.5
교육환경보호구역	14,153	7.6
버스정류소	117,135	62.7
택시정류소	2,960	1.6
해수욕장	156	0.1
거리	763	0.4
광장	142	0.1
지하철역 주변(출입구)	4,233	2.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7,122	3.8
횡단보도	20,394	10.9
기타**	5,773	3.1

* 자료출처: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결과 보고(2025.2.3.)

** 관광지, 문화재, 마을쉼터·마당, 주차장, 산책로, 등산로, 하천, 시장 등

2. 가향 담배 제조·판매 금지 등(송재봉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 기능을 추가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 9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②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u>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u>	③ ----- ----- ----- ----- <u>전자식별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성인인증장치”라 한다)</u> -----.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④ -----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담배 -----

-----.

<삭 제>

제9조의6(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등 금지)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또는 니코틴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7(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
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1.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판매
현황

2.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현황

3. 그 밖에 금연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가향물
질을 첨가하거나 판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u>에 사용한 자</u> 4. (생 략) ② ~ ⑤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1) 담배자동판매기 부착 성인인증장치의 인증 기능 강화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미성년자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와 운영 방식을 규제하고 있음.

- 동 법 제9조제2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는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담배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영업장 내부, △흡연자를 위해 설치된 흡연실(미성년자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함)로 설치장소를 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9조제3항은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여, 신분증·운전면허증·신용카드 등으로 성인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고 있음.

<담배자동판매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 참고로, 2024년 기준 전국에 379대의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부착 여부 확인 등 지역 내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음.

<연도별 설치 담배자판기 현황>

(단위 : 대수)

지역	연도별 현황	
	2023	2024
서울	11	16
부산	9	10
대구	4	3
인천	5	5
광주	32	32
대전	3	4
울산	52	49
세종	2	2
경기	49	52
강원	13	14
충북	21	22
충남	33	36
전북	29	13
전남	3	0
경북	8	11
경남	131	110
제주	0	0
합계	405	379

※ (출처) '23년 및 '24년 합동점검 결과

- 개정안은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성인인증장치의 성인인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 여부 검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한층 어렵게 하여 청소년의 흡연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청소년 흡연율 >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4.4	4.5	4.5	4.2	3.6
성별	남	6.0	6.0	6.2	5.6	4.8
	여	2.7	2.9	2.7	2.7	2.4

* 출처 : 질병관리청.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성인인증장치의 본인 인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담배자동판매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등 제한적인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등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 및 아동·청소년 담배사용 예방을 위한 성인인증장치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담배 자동판매기 자체의 광고효과, 성인인증장치 내 인증 수단의 진위 확인 기술 및 본인확인 기술에 대한 정밀도·신뢰도 검증의 문제와 담배 접근성 증가 등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대상 확대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¹⁾를,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적용하고 있음.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2021. 7. 27.>

1. ~9. (생략)

② ~ ⑦ (생략)

- 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른 정의를 보면, 담배를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²⁾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쉐련·액상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1)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담배사업법」 제2조(담배의 정의)는 연초 잎을 이용하는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2024년 1월에 ‘증기로 흡입하는 경우’를 담배의 정의에 추가한 이후로 개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재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경고그림·문구 표기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담뱃갑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화 대상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담배로 개정하고 있음.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 -----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담배 ----- ----- ----- -----.

- 관련하여 송재봉의원 대표발의로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현행 법체계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없이도 현재 논의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화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담배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연 번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1	박성훈 (국민의힘)	22017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202471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
3	김선민 (조국혁신당)	220256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 규정
5	한지아 (국민의힘)	2202898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6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220464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7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2205037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확대·규정,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정의 신설
8	송언석 (국민의힘)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9	최은석 (국민의힘)	22051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0	조은희 (국민의힘)	220552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
11	김민전 (국민의힘)	221131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규정
12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221178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3	이인선 (국민의힘)	2211986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4	서명옥 (국민의힘)	221209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煙草),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5	박성훈 (국민의힘)	221230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가)연초, 나)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 다)유사니코틴(그 밖에 나뭇잎 또는 나뭇가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 참고로, 담배 판매 동향을 보면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7년 35.2억 갑에서 2023년 36.1갑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껴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0.8갑에서 6.1갑으로 급증하여 판매 비중이 2017년 2.3%에서 2023년 16.9%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수입 또한 2021년 378톤(천연 280톤, 합성 98톤)에서 2023년 771톤(천연 555톤, 합성 216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궐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궐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자료 : 기획재정부 2023년 담배시장 동향보고 보도자료, 2024.1.31.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합성		417	28,823	218	11,043	98	6,444	121	7,360	216	12,862

자료: 관세청

*중량 = 용액+용기 무게

(3) 가향담배 제조·판매 금지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라 제조자 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시키는 행위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음.

<가향물질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현행 규정>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내 담배시장에서 가향담배의 판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담배 총 판매량은 2015년 33.3억갑에서 2023년 36억갑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가향담배는 2015년 6억갑에서 2023년 16.8억갑으로 증가하여 담배 총 판매량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8.3%에서 2023년 46.7%로 급증하였음.

< 연도별 가향 담배 판매량 >

(단위: 억갑,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판매량	33.3	36.6	35.2	34.7	34.5
가향담배 판매량	6	7.6	8.6	10.6	12.3
비중	18.3	20.7	24.4	30.8	35.6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6월
총 판매량	35.7	35.8	36.3	36.0	17.3
가향담배 판매량	13.8	14.8	16.2	16.8	8.3
비중	38.7	41.3	44.6	46.7	48.0

* 출처: 기획재정부

* 담배 수입·제조 4개사(KT&G, BAT, JTI, PM) 자료(면세담배 제외)

* 담배 제조·유통·판매 현황 등은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소관임.

□ 특히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조사 결과³⁾ 우리나라 흡연자 중 77.2%가 가향 담배를 사용 중이며, 특히 13세~18세 청소년에서는 가향 담배 사용자가 85%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흡연자 중 가향담배 사용 현황 >

	흡연자(5,243명)								
	가향담배 사용자 (4,045명, 77.2%)					비가향 사용자 (1,198명, 22.8%)			
	캡슐담배 (퀄런)	일반담배 (퀄런) ※ 캡슐 없는 연초 담배	퀄런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 사용자 (계)	일반담배 (퀄런)	퀄런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비가향 사용자 (계)
전체	1,346 (25.7)	1,069 (20.4)	802 (15.3)	828 (15.8)	4,045 (77.2)	856 (16.3)	215 (4.1)	127 (2.4)	1,198 (22.8)
만13-18세 (420명)	168 (40.0)	66 (15.7)	31 (7.4)	92 (21.9)	357 (85.0)	34 (8.1)	14 (3.3)	15 (3.6)	63 (15.0)
만19-24세 (1,661명)	525 (31.6)	314 (18.9)	204 (12.3)	288 (17.3)	1,331 (80.1)	209 (12.6)	59 (3.6)	62 (3.7)	330 (19.9)
만25-39세 (3,162명)	653 (20.6)	689 (21.8)	567 (17.9)	448 (14.2)	2,357 (74.5)	613 (19.4)	142 (4.5)	50 (1.6)	805 (25.5)

3) 김희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21.9.~'22.7.)

	흡연자(5,243명)								
	가향담배 사용자 (4,045명, 77.2%)					비가향 사용자 (1,198명, 22.8%)			
	캡슐담배 (궐련)	일반담배 (궐련) ※ 캡슐 없는 연초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 사용자 (계)	일반담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비가향 사용자 (계)
남	684 (25.4)	626 (23.2)	399 (14.8)	338 (12.5)	2,047 (75.9)	477 (17.7)	120 (4.5)	52 (1.9)	649 (24.1)
만13-18세 (272명)	106 (39.0)	48 (17.7)	21 (7.7)	49 (18.0)	224 (82.4)	23 (8.4)	12 (4.4)	13 (4.8)	48 (17.6)
만19-24세 (821명)	239 (29.1)	186 (22.7)	103 (12.5)	120 (14.6)	648 (78.9)	117 (14.3)	29 (3.5)	27 (3.3)	173 (21.1)
만25-39세 (1,603명)	339 (21.1)	392 (24.5)	275 (17.2)	169 (10.5)	1,175 (73.3)	337 (21.0)	79 (4.9)	12 (0.8)	428 (26.7)
여	662 (26.0)	443 (17.4)	403 (15.8)	490 (19.2)	1,998 (78.4)	379 (14.9)	95 (3.7)	75 (3.0)	549 (21.6)
만13-18세 (148명)	62 (41.9)	18 (12.2)	10 (6.8)	43 (29.1)	133 (89.9)	11 (7.3)	2 (1.4)	2 (1.4)	15 (10.1)
만19-24세 (840명)	286 (34.1)	128 (15.2)	101 (12.0)	168 (20.0)	683 (81.3)	92 (10.9)	30 (3.6)	35 (4.2)	157 (18.7)
만25-39세 (1,559명)	314 (20.1)	297 (19.1)	292 (18.7)	279 (17.9)	1,182 (75.8)	276 (17.7)	63 (4.0)	38 (2.5)	377 (24.2)

□ 동 조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향담배 제품 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흡연 시 거부감이 낮은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비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용자 대비 현재 흡연자일 확률이 1.4배로 높아 가향담배가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 등의 흡연 유인을 낮추고, 금연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할 필요는 높은 것으로 보임.

- 특히,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양한 맛과 향 등으로 일반담배에 비하여 덜 자극적인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할 경우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는 확률 및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담배에 가향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함.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가향담배 관련 규제 사항 >

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을 위한 부분적 가이드라인		
3.1.2.2. 담배제품	맛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사용하고, 담배연기의 자극을 향으로 감추는 것은 담배 사용을 지속·촉진하는데 기여한다.	(권고) 당사국은 담배 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한다.

- 다만, 개정안은 가향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 체계적으로 담배의 제조·판매 및 수입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그 외 개정안은 가향담배 제조 및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가 보임. 참고로 「담배사업법」의 경우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원칙적으로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825,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바, 이에 따르면 의무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가향담배 규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비교>

	송재봉의원안	전진숙의원안
규제 대상	연초 또는 니코틴 외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가향물질) 첨가 담배 제조·판매 금지	- 원칙적으로 가향물질 첨가 담배 제조·판매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은 예외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향 물질이 첨가된 담배는 예외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담배의 향미를 증진하는 가향물질의 금지를 통해 흡연 유도 및 건강 유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가향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향물질 첨가 금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에도 가향담배 금지에 관한 내용은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규제 법률인 「담배사업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사)한국담배협회에서는 가향 규제 관련 개정안의 내용은 담배의 제조에 관련한 사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담배사업법」에서 논의해야 하며, 가향물질로 인한 유도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임.

(4) 실태조사 실시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의 종류별·품목별 판매현황,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담배의 종류별·품목별 현황, 그 밖에 금연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조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안 제9조의7 신설).
- 이와 같은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흡연 행태 및 담배 유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는 현행법(제8조의3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함.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흡연 실태조사 실시에는 향후 5년간 약 21억원(연평균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다만, 개정안의 담배제품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며⁴⁾, 아울러 흡연 관련 사항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에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태조사를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단위 표본(약 1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율, 금연 시도율, 간접흡연 노출 정도, 니코틴 의존도 등을 포함

4) 현재도 기획재정부가 매년 「담배시장 동향」을 통해 담배 판매·반출량 추이를 공개하고 있음.

한 국가 보건정책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는 시·군·구별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단위의 흡연율, 금연정책 인지도, 금연구역 준수 여부 등 지역 보건사업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흡연 관련 조사 비교>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법적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지역보건법 제4·5조
주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총괄) + 지자체
조사 대상 범위	전국 대표 표본 약 1만 명	시·군·구별 표본, 총 23만 명
흡연 관련 조사내용	· 현재 흡연율(성별·연령별) · 청소년 흡연 시작 연령 · 금연시도율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 간접흡연노출(가정·직장·공공장소) · 니코틴의존도 관련 지표(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가능)	· 현재 흡연율(시·군·구별) · 고위험 음주·흡연 동반행태 · 금연 의지 및 지역 금연정책 인지도 · 간접흡연 노출 정도(가정·공공시설) · 지역 보건사업 모니터링 지표 포함(예: 금연구역 준수 여부)
활용	국가 보건정책, 금연종합대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등)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	각 지자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활용.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복지부가 담배의 종류별·품목별 판매현황 또는 연령대별 선호 현황을 조사·발표하는 것은 일반인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편, 담배회사들의 마케팅에 활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전자담배의 전자거래 금지(서지영의원안, 제9조의6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6(전자담배의 거래제한)</u> <u>누구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이하 “전자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1조의2(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전자거래를 통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한 자</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⁵⁾를,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적용하고 있음.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6. 7., 2014. 5. 20., 2014. 12. 23., 2017. 3. 21., 2017. 12. 30., 2021. 7. 27.>

1. ~9. (생략)

② ~ ⑦ (생략)

- 한편,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른 정의를 보면, 담배를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⁶⁾하고 있어,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껴련·액상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5)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담배사업법」 제2조(담배의 정의)는 연초 잎을 이용하는 액상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2024년 1월에 ‘증기로 흡입하는 경우’를 담배의 정의에 추가한 이후로 개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현재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경고그림·문구 표기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담배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전자담배를 통한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7년 2.2%에서 2024년 3.0%로 3%대를 유지하고 있고, 껌련형의 경우에도 2019년 2.6%에서 2024년 1.9%로 2% 안팎의 사용률을 유지하고 있음.

<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률 >

(단위: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¹	전체	2.2	2.7	3.2	1.9	2.9	3.3	3.1	3.0
	남자	3.3	4.1	4.7	2.7	3.7	4.5	3.8	3.7
	여자	0.9	1.1	1.5	1.1	1.9	2.2	2.4	2.2
껌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²	전체	-	-	2.6	1.1	1.4	2.3	2.1	1.9
	남자	-	-	4.0	1.6	1.8	3.2	2.7	2.4
	여자	-	-	1.2	0.5	0.8	1.3	1.4	1.4

1.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비율

2. 껌련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껌련형 전자담배(열담배, 예아이코스, 글로, 릴 등을 사용한 사람의 비율

* 출처 : 질병관리청, 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개정안은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흡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 물에서 ‘전자담배 액상’ 관련 게시물이 2023년 5월 37,598건에서 2024년 5월 112,089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여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6(전자담배의 거래제한) 누구든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하여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이하 “전자담배”라 한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담배의 제조·판매 및 유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제12조제4항 등)에서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되어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겠음.

<「담배사업법」상 담배 판매 관련 규정>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생략)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7. (생략)

<담배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연 번	대표 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1	박성훈 (국민의힘)	22017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202471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
3	김선민 (조국혁신당)	220256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4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20287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또는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 규정
5	한지아 (국민의힘)	2202898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 규정
6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220464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7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2205037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잎, 줄기, 뿌리’로 확대·규정, 전자담배(연초 니코틴) 정의 신설
8	송언석 (국민의힘)	2205041	- 담배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9	최은석 (국민의힘)	220514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0	조은희 (국민의힘)	2205523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 ‘니코틴 외의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규정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거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인정된 니코틴’은 제외
11	김민전 (국민의힘)	221131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니코틴을 말한다)’으로 확대·규정
12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2211785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3	이인선 (국민의힘)	2211986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로 확대·규정
14	서명옥 (국민의힘)	2212099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煙草), 니코틴’으로 확대·규정
15	박성훈 (국민의힘)	2212302	-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가)연초, 나)합성니코틴(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을 합성하여 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 다)유사니코틴(그 밖에 나뭇잎 또는 다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규정

□ 참고로, 담배 판매 동향을 보면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7년 35.2억 갑에서 2023년 36.1갑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껴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0.8갑에서 6.1갑으로 급증하여 판매 비중이 2017년 2.3%에서 2023년 16.9%로 약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수입 또한 2021년 378톤(천연 280톤, 합성 98톤)에서 2023년 771톤(천연 555톤, 합성 216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담배 판매량 및 제품별 판매 비중>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판매량(억 갑)	35.2	34.7	34.5	35.9	35.9	36.3	36.1
껴련담배	34.4	31.4	30.6	32.1	31.5	30.9	30.0
껴련형 전자담배	0.8	3.3	3.8	3.8	4.4	5.4	6.1
껴련형 전자담배 판매비중(%)	2.3	9.5	11.0	10.6	12.3	14.9	16.9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담배시장 동향보고 보도자료, 2024.1.31.

<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현황 >

(단위: 톤, 천불)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천연	잎 추출	55	5,638	2	160	280	23,263	554	38,969	555	44,456
	다른 부분										
합성		417	28,823	218	11,043	98	6,444	121	7,360	216	12,862

* 자료: 관세청

** 중량 = 용액+용기 무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접근 예방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 시 담배의 전자거래 금지 규정이 적용 가능하므로,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6